

第144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9月14日(水)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1988年度國政監查實施計劃案

審査된案件

- 1. 1988年度國政監查實施計劃案..... 2面
- 2. 國政監查結果報告書作成小委員會構成的件..... 21面

(14時26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4回定期會 第1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간단한 人事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3回 臨時會이후 50餘日만에 건강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고 當 委員會에서 國政을 審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第13代國會는 16年만에 國政監查를 復活 實施하게 되어 이번 第144回定期會는 매우 뜻깊은 定期國會라 하겠습니다.

오늘 委員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案件인 國政監查實施計劃案에 대한 說明을 들으시고 이를 確定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月中 20日間에 걸쳐서 實施하게 될 勞動委員會의 國政監查에 있어서는 勞動行政이 바로 되고 勤勞者를 비롯한 疎外階層인 庶民大衆의 生活安定을 기함으로 해서 이 나라의 社會安定 政治의 安定을 가져오고 그리고 南의 自由民主主義가 北의 共產主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데 政策的 焦點을 맞추고 있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國會的 基本的 機能이란 立法의 機能 豫算 決算承認의 機能 國政統制의 機能 이 세가지를 基本的 機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第144回 定期會는 많은 勤勞關係의 改正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9兆가 넘는 豫算을 審議하게 되고 與野가 다같이 民主化로 가는 마당에 名實共히 우리 國會가 國政을 統制하는 國會로 位相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監查의 目的에도

明示한 바와 같이 國政運營의 實態를 정확히 파악하는 監查가 되도록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國內 現場確認과 海外觀察 등을 통해서 現場에서 수집하신 생생한 資料들을 토대로 보다 폭넓고 次元높은 國政質疑와 勞動行政改善方案들을 提示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國政監查가 진행되어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委員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立法調査官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柳盛薰 立法調査官 柳盛薰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金令培 방금 報告를 들으신 것과 같이 우리 勞動委員會 委員으로 계셨던 石準規委員께서 勞動委員을 辭任하시고 그 後任으로 金在光議員이 當 委員會 委員으로 補任되시어 오늘 처음 參席하셨습니다.

慣例에 따라서 金在光委員님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光委員 金在光입니다.

黨의 형편에 따라서 勞動委員會에 配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遲參한 이 사람을 나무라지 마시고 寬容을 베풀어 주시기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리고 방금 報告를 통해서 들으신 請願은 지난번 會議에서 構成한 請願審査小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査報告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 委員會에 새로 任命
되어온 職員을 紹介하겠습니다.

먼저 卓英鎭 專門委員을 紹介합니다.

다음은 柳盛薰 立法調査官을 紹介합니다.

다음은 鄭求福 立法調査官을 紹介합니다.

(職員人事)

1. 1988年度國政監査實施計劃案

(14時35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88
年度國政監査實施計劃案을 上程합니다.

第144回 定期會에서의 國政監査는 第1次 國
會 本會議에서 議決한 대로 各 常任委員會別
로 오는 10月5일부터 10月24日 까지 20日間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國政監査는 國政監査計劃
書에 의하여 실시되는 바 國政監査및調査에관
한法律 第2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따라
그동안 2次에 걸쳐 委員長 및 各 4黨幹事會
議에서 우리 勞動委員會 監査計劃案을 마련하
고 運營委員會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委員會
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監査計劃案을 여러 委員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專門委員 나오셔서 1988年度國政監査
計劃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卓英鎭 專門委員입니다.

1988年度 勞動委員會所管 國政監査計劃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委員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國政監査計劃案 作成經緯에 대해서 간
단히 설명한 다음 國政監査計劃案을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6年만에 復活 實施하게
되는 이번 國政監査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
律 第2條에 의거 國政監査計劃書에 의하여
實施하도록 되어 있고 國政監査計劃書는 常任
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作成하도
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國政監査計劃案을 作成하기 위하여
8月25日과 9月1日 2次에 걸쳐 國會專門委員
團會議를 갖고 運營委員會에서 마련한 國政
監査計劃書作成要綱이라는 指針書를 배부받고...
이 指針書는 委員님들에게 배부하지 않았습니

다.

同 指針書에 따라 草案을 작성하여 委員長
님께 報告를 드리고 委員長님의 修正指示에
따라 補完作業을 계속하고 그후 4黨間의 幹
事會議를 9月8日과 9月12日 2次에 걸쳐서 갖
고 同 計劃案에 대하여 精密檢討를 하여 4
黨幹事間의 完全 合意下에 國政監査計劃案을
작성하여 運營委員會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이 計劃案을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서 報告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運營委員
會에서는 當 委員會의 計劃案을 수정없이 협
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油印物에 따라서 1988
年度國政監査計劃案을 報告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報告)

1988年度國政監査計劃書(案)

1. 監査의 目的

憲法 第61條 國會法 第120條 및 國政監査
및調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國政監査를 實施함
으로써 勞動委員會所管事項에 대한 國政運營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立法活動에 반영하고
深度있는 1989年度 豫算案審査 등을 위한 資
料 및 情報의 획득을 目的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88.10.5 10.24(20日間)

3. 監査實施 對象機關

委員會選定對象機關 (國監調査法第7條第 1號 - 3號)	本會議承認對象機關 (國監調査法第7條第4號)
1) 勞動部	1) 地方勞動廳및地方事務所
2) 中央勞動委員會	2) 地方勞動委員會
3) 中央職業安定所	3) 韓國產業安全公團
4) 勤勞福祉公社	4) 韓國職業訓練管理公 團및傘下機關
5) 海外開發公社	5) 勤勞福祉公社의 傘下 機關
6) 서울特別市	6) 海外開發公社釜山支 社
7) 釜山直轄市	
8) 大邱直轄市	
9) 京畿道	
10) 忠清北道	
11) 全羅南道	
12) 慶尙北道	
13) 慶尙南道	

4. 監査班의 編成

가. 中央監査班(서울所在 機關의 監査는 全 員參與)

監査班長: 金令培(勞動委員會 委員長)

監査委員: 張永喆(勞動委員會 委員)

" 金東仁(")

" 孫柱煥(")

" 梁慶子(")

" 李康熙(")

" 李潤子(")

" 李台燮(")

" 韓光玉(")

" 李相洙(")

" 李海瓚(")

" 盧武鉉(")

" 金在光(")

" 李仁濟(")

" 金炳龍(")

" 金鎔采(")

事務補助者: 卓英鎮(專門委員)

" 宋芳燮(立法審議官)

" 柳盛薰(立法調查官)

" 文亨男(")

" 鄭求福(")

" 李秀用(行政主事)

" 速記士 4名

나. 地方1班(慶南, 釜山, 慶北, 大邱, 江原

地域)

監査班長: 金令培(勞動委員會 委員長)

監査委員: 金東仁(勞動委員會 委員)

" 梁慶子(")

" 孫柱煥(")

" 韓光玉(")

" 盧武鉉(")

" 金在光(")

" 金炳龍(")

事務補助者: 卓英鎮(專門委員)

" 柳盛薰(立法調查官)

" 文亨男(")

" 速記士 2名

다. 地方2班(全南北, 光州, 忠南北, 京畿, 仁川地域)

監査班長: 張永喆(勞動委員會 委員)

監査委員: 李康熙(")

" 李潤子(")

" 李台燮(")

" 李相洙(")

" 李海瓚(")

" 李仁濟(")

" 金鎔采(")

事務補助者: 宋芳燮(立法審議官)

" 鄭求福(立法調查官)

" 李秀用(行政主事)

" 速記士 2名

5. 監査日程 및 場所

가. 監査期間 區分

期 間	區 分	備 考
10. 5 11(7日間)	서울所在 機關監査	全委員參與
10.12 20(9日間)	地方監査	監査班別
10.21 - 22(2日間)	中央確認監査	全委員參與
10.23 - 24(2日間)	監査結果의 整理 및 報告書作成	小委員會

4 (第144回·勞動第1次)

나. 監查日程 및 場所

月 日	時 間	監 查 對 象 機 關	監 查 場 所	備 考
10. 5(水)	10:00 - 18:00	勞動部	被監查機關	全委員參與
10. 6(木)	10:00 - 12:00	中央勞動委員會	"	"
	14:00 - 17:00	勤勞福祉公社		
10. 7(金)	10:00 - 12:00	海外開發公社	"	"
	14:00 - 17:00	서울特別市		
10. 8(土)	10:00 - 13:00	產業安全公團	"	"
10. 9(日)	休 日			
10.10(月)	10:00 - 12:00	職業訓練管理公團	"	"
	14:00 - 17:00	中央職業安定所		
10.11(火)	10:00 - 12:00	서울地方廳	"	"
	14:00 - 17:00	서울冠岳事務所		
10.12(水) ↓ 10.20(木)	地 方 監 查 (別 紙)		"	第1·2班
10.21(金)	10:00 - 12:00	勤勞福祉公社	國 會 勞動委員會	全委員參與
	13:00 - 15:00	職業訓練管理公團		
	15:30 - 16:30	產業安全公團		
	17:00 - 18:30	海外開發公社		
10.22(土)	10:00 - 18:00	勞動部	"	"
10.23(日) 10.24(月)	監查結果報告書 作成			小委員會

(다음 「페이지」에 계속)

(別紙)

監 查 日 程 (地 方 1 班)

月 日	時 間	監 查 日 程	備 考
10.12(水)	08:30 - 09:30	金浦出發 金海到着	航空便
	09:30 - 10:30	金海出發 馬山到着	버스便
	10:30 - 12:30	馬山事務所	
	14:00 - 15:00	慶南地方勞動委員會	버스便(10分)
	15:20 - 17:20	昌原機能大學	" (10分)
	17:40 - 19:40	慶南道廳(昌原)	(昌原宿泊)
10.13(木)	08:40 - 10:00	昌原出發 釜山到着	버스便
	10:00 - 12:00	釜山地方勞動廳	
	13:30 - 14:30	海外開發公社釜山支社	버스便(25分)
	15:00 - 17:00	釜山直轄市廳	" (25分)
	17:30 - 18:30	釜山地方勞動委員會	(釜山宿泊)
10.14(金)	08:40 - 10:00	釜山出發 蔚山到着	버스便
	10:00 - 12:00	蔚山事務所	
	13:30 - 15:30	蔚山職業訓練院	(蔚山宿泊)
10.15(土)	08:30 - 10:00	蔚山出發 浦項到着	버스便
	10:00 - 12:00	浦項事務所	
	13:00 - 15:30	浦項職業訓練院	(慶州宿泊)
10.16(日)		(休 日)	(慶州宿泊)
10.17(月)	08:30 - 10:00	慶州出發 大邱到着	버스便
	10:00 - 12:00	大邱地方勞動廳	
	13:30 - 15:30	慶北道廳	버스便(10分)
	15:50 - 17:50	大邱直轄市廳	(大邱宿泊)
10.18(火)	09:00 - 10:00	大邱出發 龜尾到着	버스便
	10:00 - 12:00	龜尾事務所	
	13:30 - 15:30	龜尾職業訓練院	
	16:03 - 19:00	龜尾出發 서울到着	무궁화열차(서울歸家)
10.19(水)	08:20 - 09:10	金浦出發 江陵到着	航空便
	09:10 - 12:00	江陵出發 太白到着	버스便

月 日	時 間	監 查 日 程	備 考
10.19(水)	13:00 - 15:00	太白事務所	버스便(30分)
	15:40 - 18:40	長省病院 長省硅肺 센터	
	18:50 - 21:00	太白出發 東海到着	버스便(東海宿泊)
10.20(木)	09:30 - 12:00	東海病院 塵肺研究所	버스便
	13:30 - 14:30	東海出發 - 江陵到着	
	14:30 - 16:00	江陵事務所	航空便(서울歸家)
	17:00 - 18:00	江陵出發 서울到着	

(別紙)

監 查 日 程 (地 方 2 班)

月 日	時 間	監 查 日 程	備 考
10.12(水)	08:00 - 09:30	金浦出發 麗水到着	航空便・버스便
	10:00 - 12:00	麗水事務所	
	12:00 - 12:40	麗水出發 - 順天到着	버스便
	14:00 - 16:00	順天職業訓練院	버스便(10分)
	16:20 - 18:20	順天病院	버스便(光州宿泊)
	18:20 - 20:10	順天出發 - 光州到着	
10.13(木)	10:00 - 12:00	光州地方勞動廳	버스便(15分) (光州宿泊)
	13:30 - 15:30	全羅南道	
	15:50 - 16:50	全南地方勞動委員會	
10.14(金)	08:00 - 10:00	光州出發 - 裡里到着	버스便
	10:00 - 12:00	裡里職業訓練院	
	13:30 - 14:30	裡里出發 - 全州到着	버스便 버스便(10分) (全州宿泊)
	14:30 - 16:30	全州事務所	
	16:50 - 17:50	全北地方勞動委員會	
10.15(土)	08:40 - 10:00	全州出發 - 大田到着	버스便
	10:00 - 12:00	大田地方勞動廳	

月 日	時 間	監 査 日 程	備 考
10.15(土)	13:30 14:30	忠南地方労働委員會	(유성宿泊)
10.16(日)	(休 日)		(속리산宿泊)
10.17(月)	08:40 10:00	속리산出發 - 淸州到着	버스便
	10:00 12:00	淸州事務所	
	13:30 15:30	忠北道廳	버스便(5分)
	15:40 16:40	忠北地方労働委員會	" (25分)
	17:20 19:20	淸州職業訓練院	(淸州宿泊)
10.18(火)	08:20 10:00	淸州出發 水原到着	버스便
	10:00 12:00	水原事務所	
	13:30 15:30	京畿道廳	버스便(25分)
	16:00 18:00	安養事務所	(서울歸家)
10.19(水)	08:50 10:00	國會出發 仁川到着	버스便
	10:00 12:00	仁川地方労働廳	
	13:30 14:30	仁川地方労働委員會	버스便(20分)
	15:00 17:00	中央病院 産業再活院	
	17:10 18:10	労働科學研究所	(서울歸家)
10.20(木)	08:40 10:00	國會出發 議政府到着	버스便
	10:00 12:00	議政府事務所	
	13:30 15:20	議政府出發 城南到着	버스便
	15:30 17:30	城南事務所	(서울歸家)

6. 監査要領

가. 監査方法

- 1) 監査는 주로 各 監査對象機關의 運營全般에 관한 現況報告聽取·資料提出要求·政策質疑·現場 또는 文書確認의 方法으로 實施한다.

- 2) 特히 필요한 때에는 現場檢證과 聽聞會를 開催한다.

나. 監査資料提出要求

- 1) 監査를 위한 資料는 本 計劃書에 明示된 事項과 그 關聯資料 그리고 各 監査委員이 要求하는 資料를 提出토록

한다.

- 2) 各 監査委員은 該當機關의 監査實施 15日前(9.20)까지 要求資料 目錄을 委員長에게 提出하고, 委員長은 이를 綜合하여 9.23까지 資料提出을 書面으로 要求한다.
- 3) 各 監査班이 資料提出을 要求할 때에는 委員長 名義로 監査班長이 하되 事前에 준비된 書式을 사용한다.

다. 證人등의 出席要求

- 1) "機關長 및 關係部署長"을 證人으로 出席要求 한다.
- 2) "關係部署長"은 中央部處의 경우에는

局長級 이상과 總務課長으로 하고 地方 行政機關의 경우에는 課長級 이상으로 한다.

- 3) 傘下機關의 경우에는 執行幹部級 이상으로 한다.
- 4) 關係部署長의 職責 및 姓名은 事前에 把握하여 出席要求書를 明白하게 傳達되도록 措置한다.

다. 宣誓要領

- 1) 宣誓는 證人만을 對象으로 實施한다.
- 2) 證人이 多數일 때에는 함께 宣誓하되 機關長이 代表로 宣誓書를 朗讀하고 기타 證人은 宣誓書에 署名, 捺印만을 하도록 한다.
- 3) 監査委員이 宣誓를 받을 때에는 委員長 또는 監査班長만이 起立하여 舉手한다.
- 4) 委員長 또는 監査班長은 證人이 宣誓前에 반드시 그 趣旨와 僞證의 罰이 있음을 충분히 說明하여야 한다.

마. 重要監査事項

- 1) 1987年度 決算 및 1988年度 豫算의 執行事項
- 2) 1989年度 豫算案의 審査에 필요한 事項
- 3) 1987年度 및 1988年度 主要政策의 推進事項
- 4) 1987年度 및 1988年度 主要事業의 推進事項
- 5) 人事管理등 機關運營에 관한 事項
- 6) 傘下機關, 傘下企業體 및 公團의 運用에 관한 事項
- 7) 勞動組合, 勞動爭議 및 職業安定과 相關된 事項(各市道)
- 8) 기타 監査委員이 필요로 하는 事項

바. 監査對象機關의 資料提出

監査對象機關에서는 다음, 資料를 監査時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에 所在하는 機關에서는 監査 5日前까지 그 資料를 監査委員에게 事前 配付토록 한다.

- 1) 1988年度 業務現況
- 2) 1987年度 決算 및 1988年度 豫算執行狀況
- 3) 1987年度 및 1988年度 各種 政策

및 事業計劃과 그 實績

- 4) 1987年度 및 1988年度 監査院監査 및 自體監査時에 指摘된 事項 및 是正措置 結果
- 5) 1987年度 및 1988年度 各種 民願處理 現況
- 6) 所管業務에 관한 各種 施行令등의 制定·改正·廢止 現況
- 7) "1"項 내지 "6"項에 相關된 資料
- 8) 勞動組合, 勞動爭議 및 職業安定과 相關된 資料(各市道)
- 9) 12代國會時 國會答辯措置事項(本會議, 常任委員會)
- 10) 기타 監査委員이 要求하는 資料

사. 監査進行順序

- 1) 監査宣言(委員長, 監査班長)
- 2) 委員長의 人事
- 3) 證人宣誓
- 4) 業務現況報告 聽取
 - 機關長人事 및 幹部紹介
 - 現況說明
 - 細部事項說明
- 5) 政策質疑 및 文書確認등
- 6) 委員長의 監査終了 人事
- 7) 監査終了宣言

7. 所要經費

가. 國內旅費規定에 의한 法定經費(증인배상금포함)와 實際所要經費(특별활동비포함)을 各各 計上한다.

- 1) 法定經費
- 2) 實際所要經費
- 3) 不足額

나. 監査費用은 監査計劃에 의거 一括 支給받되 監査後, 實際監査日程에 따라 精算한다.

8. 기타 필요한 事項

가. 國政監査報告書作成

- 1) 國政監査結果報告書는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作成한다.
- 2) 小委員會 構成은 各 交涉團體 所屬委員으로 構成한다.
- 3) 小委員會에서 취합 整理된 監査結果報告書(案)는 委員會에 報告한 후 採擇 確定한다.
- 4) 報告書에는 監査의 目的, 監査實施機關,

實施經過 및 監査結果(主要監査實施內容, 是正要求事項, 政府移送要求事項, 建議事項, 기타監査의件)와 處理意見 등을 포함토록 한다.

나. 監査의 公開

- 1) 委員會 議決로 監査를 公開한다.
- ※國政監査推進日程表(添附)

(參 照)

國政監査 推進 日程表

日 時	實 施 事 項	備 考
'88 9. 5(月)	監査計劃書(案) 作成	
9. 6(火)	委員長에게 計劃書(案) 報告	委員長室
9. 8(水)	第1次 幹事會議(幹事會議에서 合意)	"
19:00	(案報告 및 協議)	
9. 12(月)	第2次 幹事會議	"
11:00	(案 最終協議)	
9. 12(月) 午後	運營委員會에 計劃書(案) 提出	
9. 13(火)	運營委員會 會議	
15:00		
9. 14(水)	勞動委員會 會議(案報告 後 確定)	會議室
9. 15(木)	本會議에서 監査承認機關 議決 (監査計劃書 確定)	
9. 21(水)까지	各 委員의 資料提出要求 目錄收合	
9. 23(金)까지	監査對象機關에 대한 報告要求, 證人 및 參考人出席要求, 各種資料提出要求 등 通知	
9. 30(金)	行政上 準備完了	
10. 5(水)	監査實施	
10. 24(月)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수고하셨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13 페이지 監査進行順序에 보면 資料要請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 두고 이 計劃案에

그 項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하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專門委員으로부터 報告를 들으신 監査計劃案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다른 意見이 계시거나 또는 잘 이해가 가지 아니해

서 質問이 있으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委員님 말씀하시죠.

○孫柱煥委員 몇가지 質問부터 좀 하고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地方監査對象을 보면 病院이 4個所가 있고 서울冠岳事務所를 포함해서 地方事務所가 14個所가 있습니다. 그리고 職業訓練院이 6個所입니다.

그런데 지금 職業訓練院이 모두 몇個나 됩니까?

○專門委員 卓英鎭 36個 機關입니다.

○孫柱煥委員 地方事務所는 몇個입니까?

○專門委員 卓英鎭 35個所입니다.

○孫柱煥委員 그리고 病院이 네군데인데 監査對象 病院數는 몇個나 됩니까?

○專門委員 卓英鎭 12個所입니다.

○孫柱煥委員 제 의견같아서는 이것이 國政監査가 立法資料 그리고 다음年度 豫算案審査資料 및 情報의 획득이 그 目的이라면 이런 地方事務所 職業訓練院은 標本을 選定을 해서 그 機關을 集中的으로 監査를 해서 다른 調查機關에 필요한 우리의 資料를 수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 地方事務所 14個所 職業訓練院 6個所는 우선 제한된 監査期間에 비추어서 조금 더 數字를 줄일 수 없겠느냐 하는 意見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具體적으로 가령 14個中에 10個로 하자든가 이렇게 딱 부러진 代案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까마는 이런 類似機關 地方事務所를 굳이 14군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意見陳聞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土曜日에 전부 午後監査가 다 되어 있습니다. 22일의 경우를 보면 午後 6時까지로 되어 있고 25일은 午後 3時반까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土曜日 監査는 委員들은 관찮다 하더라도 被監査機關을 생각해서 이것도 午前監査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두가지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 점에 대해서 委員長으로서 간단히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同一性 機關에 대한 監査對象 機關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 점은 좀 理由가 있다 이렇게 긍정을 합니다. 여러 委員님께서 다수의 意見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데 집약이 되면 幹事會議를 다시 열어서 조절하는 方向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해 주신 土曜日 午後에는 되도록이면 監査를 안했으면 좋겠다... 被監査機關의 公務員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國會議員이나 公務員이나 모처럼 國政監査를 施行하는 입장에서 설사 土曜日이라 하더라도 不可避性이 있다고 하면 監査는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孫委員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瓊委員 監査計劃書를 作成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던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調查計劃書上에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孫柱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監査對象과 年限을 보면 우선 첫째로 12「페이지」에 業務現況하고 決算 豫算인데 이번 監査가 72年 이후로 처음 實施하는 監査인데 그 監査에서 87年 決算하고 88年 豫算執行現況 그 다음에 3項에서는 87年度 및 88年度 各種 政策 및 事業計劃과 實績...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7年하고 88年으로 한정해서 잡은 무슨 理由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묻고서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 卓英鎭 答辯드리겠습니다.

國政監査가 每年 實施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提起 안되었을지마는 16年만에 施行되기 때문에 實施되지 않은 年度에 대해서는 관심이 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每年 定期國會라고 하는 것은 前年度 豫算 決算 그리고 그 다음해에 대한 豫算을 審議 確定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準해서 이와 같이 作成을 했습니다.

○李海瓊委員 그러시면 가령 이번에 처음 實施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것들이 많단 말이지요. 5 共非理와 같은 경우도 지금 調查하지만 예전에 벌어진 일들이 많은데 가령 國政監査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벌어지지만 사실 문제의

所以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設定하면 이후로 부터는 來年度 監査는 88年度 것만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한 監査는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점을 저는 87年 88年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은 86年 이전 것에 대한 行政府의 業務에 대해서 監査 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느낌이 하나 들고 個人的인 意見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지난 옛날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現時點에서 판단하건대 政府의 政策에 있어서 혹은 豫算執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까지는 監査의 폭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專門委員 卓英鎭** 李委員님 10項을 보면 「기타 監査委員이 要求하는 資料」가 있습니다. 그래서 要求하실 수가 있겠고 9項에 보시면 「12代國會時 國會答辯措置 事項(本會議 常任委員會)」해가지고 李委員님 같이 中금중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해서 9項 10項을 넣어 놓았습니다.

○**張永喆委員** 우리 監査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國會의 先例를 보면 86年度 豫算決算報告를 그 다음해에 하면서 사실은 86年度에 대한 政策質疑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그해로 끝나는 前例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監査의 時期에 대한 어떤 範疇의 폭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勞動委員會 하나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運營委員會에 일단 協議를 하는 것이 좋을거예요.

○**委員長 金令培** 이점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定期國會에 임해서 지난해의 決算을 審議하고 또 새해의 豫算을 審議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資料와 內容을 파악하기 위해서 國政監査를 施行합니다. 定期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通常的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李海瓚委員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이것은 제한없이 얼마든지 關係機關 다시 말하면 被監査機關에 監査를 나가서 監査할 수 있다 이렇게 思料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오래 묵은 事項이라도 重要性이 있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 그렇

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오래 묵은 문제 말하자면 政治的 여러가지 어떤 時事性이라든가 時效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갔는데 이런 것 까지야 各 委員님들께서 너무 파고 들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만큼 各 委員님들 양심에 따라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思料가 됩니다.

李相洙委員님 말씀하세요.

○**李相洙委員** 한가지 意見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監査日程을 보니까 거의 한 機關에 가서 監査할 수 있는 時間이 많은 경우가 세시간 보통 한시간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監査하려면 證人도 경우에 따라서는 出席해서 물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聽聞會까지 열도록 되어 있는데 두시간동안 가서 業務現況報告 듣고 이런 式으로 日程을 잡아가지고 深度있는 監査를 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地方2班의 경우를 보니까 病院 職業訓練院 그밖의 地方行政機關 또는 地方勞動行政機關에 대해서는 아까 孫柱煥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行政機關이나 病院을 정해서 集中的으로 監査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計劃을 좀 修正해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光州地方勞動廳은 아예 들리지 않고 全州만 들리든지 해서 集中的인 監査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基本的으로 이 監査日程을 좀 調整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調整하는 委員을 選定해가지고 그 班에서 다시 한번 編成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令培** 알겠습니다.

지금 李相洙委員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前에 孫柱煥委員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類似性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까도 委員長으로서 孫委員께서 말씀드리기를 理由가 있는 것으로 肯定的인 答辯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委員님들께 물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地方監査日程에 있어서 너무 監査對象機關을 많이 定하다 보니까 대충 點檢的인 監査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 하니만큼 보다 더 深度있는 監査를 하기 위해서 被監査機關을 줄여서 調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意見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면 잠시 停

會를 해서 幹事會議에서 다시 調節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異議가 없습니까?

○李康熙委員 委員長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李康熙委員 말씀하세요.

○李康熙委員 幹事會議에서 이미 수차례 서로 協議를 했고 各 委員님들이 그러한 데는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의견도 많이 집약이 되어 가지고 各 黨의 幹事委員들이 이 日程을 定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보아야 된다는 意見도 조금씩은 委員님들간에 意見차가 계속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監査班長님들이나 班員들이 나가서 그날에 대한 日程을 協議를 해가면서 거기에 그러한 時間을 調整을 해도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또 全面的으로 뜯어고친다는 것도 상당히 意見이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基本으로 하고 '모델'로 하고 그렇게 監査班長이나 監査班員들이 協議를 해가면서 어쨌든 하여튼 國益에 도움이 될 수 있는 國政監査를 하니 만치 그러한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길로 協議가 되는 것으로 해서 監査班長님이 責任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李相洙委員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요 그 의견에는 이런 難點이 있어 보입니다.

미리 監査對象機關이 정해져야 만이 충분히 우리가 준비도 하고 그 機關에 대한 資料要求도 해야 될텐데 그때 그때 現場에 가지고...

○李康熙委員 資料는 基本으로 要求해 놓고...

○李相洙委員 그렇지만 우리가 地方機關의 경우에 어느어느 機關만을 간다고 딱 알고 있는 것하고 全體를 가되 경우에 따라 調節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준비할 때 우선 負擔부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監査對象을 特定해 가지고 상대방 監査를 받는 機關에 있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괜히 監査를 받지 않는 機關이 業務時間을 내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令培 盧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저는 두가지 見解 모두가 다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監査機關別로 深度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맨 처음에 이렇게 많은 機關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각기 그 동안에 일어났던 문제들과 여러가지 監査를 해보고 싶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機關別로 정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機關에 具體的으로 해당하는지를 아직 정리를 못한 狀態에서 事務所에 해당되는 부분도 많다 地方官署도 많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많이 좀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機關을 추려버리고 나면 事案別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事前情報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機關을 대폭 줄여버리면 상당히 나중에 가서 監査를 해보고 싶은 重要事案을 따져볼 데가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넣어 놓고 보니까 벽차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班別로 調整을 하게 될 경우에 공연히 번거롭게 하지 않느냐 이런 조금 미안한 감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監査라는 것은 꼭 現場에 가서 하는 監査도 있겠지만 資料를 提出받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監査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李康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監査對象 機關은 選定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하고 또 과정에서 提出되어야 될 資料는 다 받고 그 資料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監査라고 보기 때문에 받고 그렇게 해서 日程을 班別로 再調整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重要事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熙委員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님이 하신 말씀 상당히 效果的으로 肯定的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盧委員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으로 16年만에 國政監査를 시작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機關이나 모든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懸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저는 幹事會議 첫날 뒤 「업저버」라면 「업저버」로 參席을 해가지고 實質的인 말씀은 못드렸지만 그런 決定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實際的으로 모르고 있는 우리 傘下의 行政問題를 좀 더

深度있게 우리가 適時에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提案되었으니 만치 이대로 原案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添言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하나 물어보지요. 예컨대 地方監査를 내려가서 10月12日 麗水에 가가지고 事情上 그 다음날 光州로 가지 않고 계속 麗水에서 하루종일 監査를 할 수 있는 그런 流動的인 權限이 그때그때 주어지는가요?

○委員長 金令培 예. ○李相洙委員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그때그때 狀況에 따라서 處理할 수도 있겠군요?

○委員長 金令培 이 計劃書에 나타난 이 計劃을 原則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現場事情에 의해서 이 日程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런데 委員長님! 달라지는 경우에 서로 意見이 다를 경우에 調整問題를 한번 論議……

○委員長 金令培 그거야 班長이 責任지고 여러 委員님들 하고 協議해서 하는 것이지요.

○孫柱煥委員 節次에 따라서 本會議로 넘어가야 될 事案은 本會議 決議事項인데 말이지요…… 여기에 決定되면 이대로 가령 時間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6시에 끝날 것이 밤 12시에 되든지 새벽 2시에 되든지 時間延長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委員會와 本會議 議決되어 있는 監査對象機關에 대한 監査는 原則으로 해야 우리가 성실한 院의 職分을 다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同一 機關 地方事務所 14個 職業訓練所 6개 이것이 지금 今年만 國政監査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1년에 한번씩 定例行事化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조금 調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래서 그런 意見이 있는가 하면 이 原案 이대로 두고 現場에서 班長이 적절하게 調節해 나가자 하는 意見하고 지금 兩立이 되어 있습니다.

敷衍해서 설명을 드리면 李康熙委員께서 1次 幹事會議 때에 民正黨側 幹事代理로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協議에 參與를 하셨었는데 그때

1次 幹事會議에서 被監査對象機關의 選定은 現在 여러분들에게 配布해 드린 油印物에 나타난 機關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2次 幹事會議에서 너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24時까지 監査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너무 무리다 해가지고 많이 줄인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고……

韓光玉委員 말씀하세요.

○韓光玉委員 이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孫柱煥委員께서 一理 있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번 監査는 16年만에 우리 國會가 行政府의 그 동안에 實施해 온 政策 또 豫算執行 關係를 點檢하는 機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計劃은 욕심같아서는 아마 傘 傘下機關을 全部 하고 싶지만 주어진 時間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고충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案은 幹事들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고충과 또 여러 가지 討論을 거쳐서 最大公約數로 뽑아놓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監査委員들이 어느 만큼 진지하게 被監査機關에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監査의 성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案은 基本的인 원칙으로 하되 監査班長의 주도하에 얼마든지 運營에 있어서는 妙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시 일천합니다마는 과거의 監査도 그런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案을 원칙으로 해서 各 監査班長과 班員들에게 그 運營은 이 妙를 거둘 수 있도록 말기고 이 案을 그대로 우리가 委員會 案으로 결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孫柱煥委員 또 李相洙委員 두 분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別異議가 없이 통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李相洙委員 양해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孫委員님 양해 하시지요?

또 다른 委員님...

○李海瓚委員 이것이 일단 本會議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오늘 運營委員會에서 所見에도 보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韓委員 말씀처럼 日程을 現地事情과 監査進行 여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監査日程에 관한 단서 項目으로 本會議에서 결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하는데...

○張永結委員 그것은 관계없읍니다.

처음 訓練院을 갔다가 그 다음 訓練院을 가보니까 資料만 받아도 관계없다 하면 資料만 받는 것도 監査要件은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런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읍니다. 運營의 妙로 소기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委員 質問 없으시지요?

李相洙委員 말씀하세요.

○李相洙委員 여기에 보니까 資料提出 요구는 監査實施 15日前 까지 하게 되어있고 또 資料提出 요구가 있으면 그 資料를 5日前까지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편의적 規定인지 반드시 이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원칙과 관계없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 문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全 委員이 共同으로 行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이 기일을 안 지켜 주셔서 根本적으로 計劃에 차질이 온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읍니다.

꼭 지켜야 된다는 원칙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엄격히 지켜져야 될 규정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保社委員會같은 경우 監査實施 10日前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9月23日까지라면 너무 압박한데 실제로 地方監査는 10月12日부터 實施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서울 監査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日前으로 못박고 9月23日까지 提出하라고 한다면 좀 무리가 있어 보읍니다.

그래서 資料要求 기간을 보다 신축성있게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 規定에는 7日前까지 資料要求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本 案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인 本委員의 의견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선 모든 資料를 監査實施日 상당한 以前에 各 委員들께서 입수를 해야 檢査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다. 그래서 애초에 計劃案은 2日前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5日前까지 당겨라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앞당겨질 수 밖에 없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한 委員이 계시더라도 추가 資料要請部分에 대해서 관계 被監査機關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提出하는 형식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읍니다.

○梁慶子委員 監査現場에 가셔도 資料要請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提出을 하면 받는 것이고 끝까지 안 내도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李海瓚委員 지난번 常任委할 때도 보니까 資料提出 요구를 했는데 추후 提出이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 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불필요한 資料가 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常任委가 열려있는 기간 동안에 그것이 추후라면 그 이튿날이라도 오면 새로 補完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끝난후에 하니까 그 다음에는 常任委員會의 公式요청이 아니고 個別的인 요청이 되어서 資料가 불성실한 資料가 提出되는 일이 있었읍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監査에서도 現地에서 요청하든지 할 때 그런 것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9月23日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委員長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되고 추후에 요구할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2次 提出要求를 가령 地方의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30日까지라든지 해서 하나 더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10月 連休나 秋夕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2次 마감을 하나 더 두어가지고 1週日前에 요청하면 監査前에는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地方에 다닐적에는 活用할 수 있기 때문에 2次 마감일을 하나쯤 더 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제가 答辯드린 가운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計劃案에 明示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이 明示된 기일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추가 資料 要請部分에 대해서는 自進提出形式으로 해서 監査活動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孫柱煥委員 資料要請時限을 委員長님께서 이렇게 意見을 내셔서 定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면 要求資料 時限을 지켜지는 것이 委員長님 말씀대로 지켜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런 原則으로 해야되지요. 불가피하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李相洙委員 資料提出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임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막연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地方監査의 경우와 서울 監査의 경우를 나누어서 이에 한해서 자료제출 마감 기한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監査 시작 이전에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監査가 10月5일부터 시작이 되면 中央監査를 먼저 합니다. 中央監査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業務報告를 받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또 하고 또 政策質疑하고 이런 과정을 다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료요청을 해서 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李相洙委員하고 李海瓚委員이 그 項에 대해서 묻는 요점은 지금 監査實施 15日전에 까지 요구자료를 委員長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지켜야 될 강제적인 條

項이라고 또 지켜야 될 義務條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委員長님 말씀은 나중에 추가로 요구를 해도 監査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條項의 해석이 이것은 소위 中央監査 할 적에는 15日전까지 9月20日까지 하고 地方監査할 때는 언제까지 한다고 두가지로 나누어 달라는 案하고 이것은 運營委員會와 저쪽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可及적이면 제출하도록 하는 이러한 條項으로 이해를 해도 좋으나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여러 가지 기우를 하시는 것인데 기우 조금도 하실 것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海瓚委員 기우가 아니고 淸州에 가서 그랬습니다.

淸州에 「택시」勞使紛糾가 있어서 거기가서 勤勞基準法을 위반한 告發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가 淸州勞動事務所長한테……

○委員長 金令培 어떤 입장에서 왔습니까?

○李海瓚委員 黨의 調査班 입장에서 왔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다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하고는 달라요.

○李海瓚委員 아니 그것에 관련되는 얘지요.

그렇게 해서 가서 本部를 통해서 書面으로 요청하면 주겠다 이렇게 答辯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해당 부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監査 1週日 전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馬山勞動事務所에 갔는데 자료요청이 가령 10月12日 갔는데 8日쯤해서 어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겠다. 혹은 10月初쯤 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다. 파악이 될 경우 그때 가서 달라고 해서 안 내놓으면 그 事務所 監査期間 동안에는 그 자료를 못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本人들이 임의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다행스럽게 볼 수 있지만 1週日前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본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監査를 또 내려갈 것입니까? 그렇게

는 안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23일까지 1次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후에 자료요청하는 기간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는지 보장을 해 놓아야 이것이 效率的인 자료 요청이 되지……

○委員長 金令培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9月23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監査施行 시작 이전의 件이고 監査가 시작이 되면 中央監査를 할 때 勞動部本部를 監査할 때 자료요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그 해당 被監査機關에 나가서 監査할 때 또 자료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하는 물음 以前에 委員長으로서 13「페이지」의 監査進行順序 가운데에 자료요청이라고 하는 입니다.

그것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李台燮委員 그 문제는 제가 答辯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에 규정된 7日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法律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통과한 法律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 보다도 참고로 律士委員님들도 계시고 委員長님 專門委員님도 계시고…… 今年의 國政監査는 「올림픽」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鑑定法에 의하면 本會議 開議 다음날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來年度에는 언제 常任委員會 모이고 언제 日程 짜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을 보면 國政調査를 하는 경우에 證人이나 鑑定人을 출석을 요구하면서 그 要求書에다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7日 이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李台燮委員 委員會에서 나누어준 國政監査施行節次 9「페이지」에 監査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7日 이전이라고 하는 기일을 정한 立法趣旨가 被監査對象機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즘 政

局에서 여러가지 논란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被監査機關에 종사하는 公務員이나 從事員 이런 사람이 아닌 一般人을 證人으로 불렀을 때를 가상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7日 기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勞動部를 우리가 監査를 하는데 7日 이전에 요청을 안했다고 해서 勞動部가 자료요청을 거부할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台燮委員 今年에는 「올림픽」 때문에 다행히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來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委員長 金令培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議事日程이 촉박해서 못합니다마는 來年부터는 國政監査를 施行 以前에 休會期間에 常任委員會를 開議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台燮委員 알겠어요.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1988年度 國政監査實施計劃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議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監査에 있어서 중요한 事項이 되겠습니다.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 第12條의 규정을 보면 「監査는 非公開로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被監査機關에서 非公開를 요청할 때에는 中央監査班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地方監査班의 경우에는 各班長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非公開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그 이외의 監査는 公開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면 그대로 議決을 할까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孫柱煥委員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法 12條가 監査는 非公開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原則으로는 監査를 公開로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예. 그렇습니다.

○孫柱煥委員 그러니까 調査는 公開로 監査는 非公開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國政監査 아닙니까?

○委員長 金令培 監査입니다.

○孫柱煥委員 그런데 公開를 原則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委員長 金令培 조금 설명을 드리지요.

一般的으로 國政監査나 調査나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 國會는 監査나 調査를 分離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公開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이나 記者가 立會해서 取材를 하는 것이나 안하는 것이나 이것에 따라서 公開나 非公開나 이렇게 性格規定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도 없는데 記者를 전부 퇴장시키고 監査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被監査機關의 長이 非公開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非公開로 하고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公開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孫柱煥委員 이것이 지금 勞動委員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各 委員會가 마찬가지로 일텐데 이것이 總務會談같은 데에서 合意가 되었습니까? 監査가 非公開라면 우리가 國政監査를 하는 것이 가령 光州問題다 또는 非理問題의 調査特委와는 다른 성격이 아닙니까? 저기는 調査特委이기 때문에 公開가 原則이고 만약에 國家機密이라든가 이런 事項이 있어서 非公開할 때에는 別途 議決을 통해서 非公開가 가능하고 지금 法 12條는 監査는 非公開가 原則이라면 事案에 따라서 公開與否를 決定하고 非公開로 法精神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令培 그러니까 이 法을 그대로 지켜야 우리가 國政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委員長으로서의 의견을 너무 강조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충분한 討議를 하셔서 結論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들 말씀해 주세요.

○李海瓊委員 오늘 運營委員會에서 公開與否는 委員會 議決에 따라서 하기로 아침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읍니다. 원래 監査는 非公開로 하고 調査는 公開로 하는 것이 原則인데 오늘 運營委員會에서의 論議는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서 그것은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었읍니다.

○孫柱煥委員 그것은 12條 但書規定에 되어 있는 얘기인데 지금 委員長님 말씀은 法 12條의 執行을 反對로 하자는 이런 말씀이라고요. 미리 公開를 原則으로 하고 非公開가 필요할 때에는 議決로 하자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같아서 12條 法精神에 따라서 監査는 非公開로 하고 필요하다면 議決에 의해서 公開해야 하지 않느냐 이 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法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으면 내일 本會議에서 法을 고치든지 말이지요.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本部監査를 합니다. 그러면 이 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非公開로 해야 됩니다. 여기 記者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요?

○孫柱煥委員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委員長 金令培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非公開로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非公開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굳이 非公開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또 한 가지 數衍說明을 드리면 公開로 할 때 監査를 시행하는 各 委員님들이나 監査를 받는 모든 公務員이나 國政에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公開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 여러 委員님들의 多數意見에 의해서

議決되는 대로 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檢討와 討論이 있기를 바랍니다.

○張永結委員 委員長님 말씀이나 孫委員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데 運營委員會에서도 李海瓚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各委員會에 맡긴다 그런 얘기인데 우선 法精神대로 運營을 하고 該當部處에서 이것은 公開해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事案에 따라서 公開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孫柱煥委員 國政監査니까 法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法을 고치든지 委員會 決議로 다시 바꾸든지 해야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꾸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張永結委員 非公開로 하고 該當部處에서 이것은 公開해도 괜찮겠다고 하면 公開하고 우선 法精神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韓光玉委員 委員長님 이 案에 대해서는 제가 立法過程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런 條項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모순된 條項이라고 봅니다. 監査라는 것이 公開裡에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고 물론 國家機密에 속하는 것은 非公開로 하는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꾸로 된 것 같은데 委員長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監査期間 동안의 監査活動이라는 것이 대부분 公開되어 야만이 그 價値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法은 그렇게 나왔지만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限 公開를 原則으로 하는 것이 本國政監査의 實效를 거두는 데 效果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리고 同 法에 의해서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定할 수 있다」 이렇게 規定하고 있습니다.

달리 우리가 議決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法精神에 조금도 위배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檢討 討論하셔서 結論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孫柱煥委員 運營委員會에서는 該當委員會 裁量으로 전부 다 넘겠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盧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國政監査및 調査法이 만들어질 때에는 參與를 안해서 精神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公開 非公開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했는데 혹시 그 法이 서로 合意해서 만들어지는 동안에 妥協過程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바로 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一般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學論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運營委員會에서도 그런 學論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이 學論이 된 것 같은데……

○李海瓚委員 學論이 된 것이 아니고 報告事項에서 나왔습니다.

○盧武鉉委員 예. 報告事項에서 얘기된 것 같은데 그 法規定이 실제로 運營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또 法規定 자체가 決議로써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풀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여기서 보면 세번째 節次로서는 中央確認監査가 다시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會議室에서 監査하게 됩니다. 그것도 記者들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 놓고 警衛더러 지키라고 할 때 現實의으로 상당히 우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監査가 一般監査로서 매우 行政의 細部的인 부분까지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非公開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行政의 매우 細部的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매우 實務的인 報告 實務的인 會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와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 방해가 될 정도이면 그때 오히려 非公開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法形式上으로서는 원칙과 예외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孫柱煥委員 지금 盧武鉉委員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專門委員 옛날 國政監査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調査特委의 경우에는 公開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國政監査의 목적이 立法資料 그리고 다음 會計年度 豫算審査의 資料라면 이 國政監査의 모든 내용이 오히려 公開되면 議員들의 立法活動資料 수집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非公開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立法趣旨가 그렇다면 우리는 國政監査를 처음 하면서 이 立法趣旨

를 한번 살려서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調查目的의 활동하고는 틀린다 말입니다. 옛날 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專門委員 卓英績** 全面 公開로 되어 있습니다. 또 會議公開의 원칙에 의해서 公開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立法過程을 조사 안해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法律은 全面 公開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議事公開의 원칙에 따라 公開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다만 委員會 議決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시간 충분히 討議하셔서 議決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國政監查 遂行에 원활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康熙委員** 지금 非公開原則에 따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非公開로 원칙을 國政監查法에 정한 定義를 아까 盧委員님이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참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두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國政監查를 할 수 있는 資格人이 바로 國會議員입니다. 議員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國家의 機密을 요하는 사항도 이 중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前提로 해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서 원칙은 그대로 두고 이것 역시 가서 이런 것은 記者의 出入을 막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그 事案에 따라서 合理的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굳이 議決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國家의 機密을 요하는 사항에서 國政監查를 하는 사람도 國會議員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場所도 우리가 사전에 한정을 받는 것이고 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法案도 立案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견해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것이 合理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金炳龍委員** 專門委員이 陪席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但書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委員會의 決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法的인 解釋만 내려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별다른 異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專門委員이 확실한 答辯을 좀

해 주세요.

○**李相洙委員** 專門委員의 解釋을 들을 필요도 없이 國政監查가 非公開가 원칙인 것은 분명합니다. 立法論으로 잘 되어 있다 못 되어 있다 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이 法에 충실한다면 非公開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監查를 해나가면서 이것은 公開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 一括으로 法에 배치되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梁慶子委員** 다른 모든 條項은 그대로 原案대로 남독하시면서 굳이 12條를 우리에게 討議하라고 委員長께서 언급하신 데 대해서 저는 重要性도 있지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군요. 그래서 그 事案의 重要性에 비추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지만 各自의견이 전부 다르고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幹事會議를 召集해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張永結委員** 그렇게 할 필요 없이 李相洙委員 말씀대로 원칙을 정해 놓고 하고 그 다음에 班長이나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事案에 따라 그대로 公開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정합시다.

○**金炳龍委員** 우선 質問한 것부터 答辯해 주세요. 專門委員에게 但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委員長 金令培** 특별한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요?

○**金炳龍委員** 但書를 그렇게 붙일 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委員會 決議로써 公開도 할 수 있고 또 非公開로도 할 수 있다든지……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金炳龍委員**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것이구단!

○**李仁濟委員** 사실은 제가 運營委員으로서 國會法 또 國政監查 및 調查에 관한 法律 制定에 관여를 했음이나 國政監查를 非公開로 調查를 公開로 정한 立法目的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國政調查는 문제가 된 特定事案을 놓고 國會에서 權限을 發動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事

案이기 때문에 公開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國政監査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고 國政全般에 관해서 全體적으로 國會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전부 公開를 원칙으로 하면 國政全般이 公開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非公開를 원칙으로 하고 公開해도 괜찮다고 할 때에는 委員會議決로써 公開하도록 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委員長님께서 이 但書 規定을 활용해서 우선 公開與否를 全體委員會가 監査할 때는 委員長이 監査班이 할 때는 監査班長에게 委任하는 형식의 議決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리냐 하면 물론 우리 全體 勞動委員會가 中央에서 監査할 때에는 그때그때 公開로 하자고 動議해서 議決을 얻어서 公開할 수가 있지만 일단 班을 나누어서 地方으로 가면 地方에서 監査할 때 公開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全體 委員會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委員會議決로써 全體委員會가 監査할 때에는 委員長한테 그리고 監査班이 할 때는 監査班長한테 公開 또는 非公開의 權限을 委任하는 議決을 미리 해 놓으면 특히 우리 勞動委員會의 監査라고 하는 것은 그 國政이라는 것이 公開해도 크게 해로울 것이 없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國防委員會라든지 財務委員會라든지 이런 데하고 달라서 오히려 勞動行政이라는 것은 公開裡에 執行도 되고 監査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包括적으로 委員長 또는 監査班長에게 公開 非公開의 權限을 委任하는 特別議決을 委員會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委員長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動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動議에 찬성하는 發言을 하고 싶습니다.

○孫柱煥委員 李仁濟委員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非公開나 公開나의 원칙은 公開로 하고 事案에 따라서 班長이나 委員長이 非公開로 하자 이것은 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까 監査는 非公開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法이 되어 있고 그 立法의 趣旨는 李仁濟委員께서 말씀

하신 그런 趣旨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존중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委員會에 두 個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委員會 全體會議을 다시 소집할 수 없다는 技術的인 문제가 있으니까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現場에서의 公開與否는 班長이 주재하는 班 小委員會의 議決에 따라서 한다면 이렇게 차라리 運營하는 것이 法精神을 따르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李台燮委員 그 전에 委員長께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원래 委員長의 생각에 監査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公開하기를 原則으로 세우셨는지 또는 地方에 갈 때는 非公開로 하고 綜合으로 나중에 委員會에 와서 하게 되는 그 會議을 公開로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公開를 하시기로 생각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마는 우선 委員長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孫柱煥委員님 말씀처럼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委員長이나 班長의 판단에 의해서 公開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 점은 中央 全體 監査를 할 때는 公開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地方 監査의 경우는 各 班長이 判斷을 하자 설사 委員長이 이런 意見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班은 班長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班長이 所屬한 委員과 協議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基本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韓光玉委員님 말씀하세요.

○韓光玉委員 法의 精神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法條項 그대로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事案에 따라서 公開할 수 있다. 班이 나뉘게 되면 班長이 權限을 委任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같은데 法의 精神이 그러한데 대해서 제가 크게 異議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國會가 立法을 하는 機關입니다. 또 立法이라고 하는 法 자체는 어느 의미에서는 實現된 政治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 條項이 잘된 條項이라고 하지 않는 데에는 아마 이 자리에서 法精神을 論하는 委員께서도 다 同意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측면을 서로 감안을 해서 이것을 非公開를 原則으로

한다 하는 그런 原則보다는 우리가 公開의 監査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肯定的으로 檢討를 하는 것이 우리 監査의 實效性을 거두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거듭 主張을 합니다.

예를 들어 監査를 하게 되면 記者團이 隨行합니다. 어디에나 監査하게 된다 하면 地方記者나 中央記者나 隨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監査場所에 가서 記者들 보고 出入을 하지 말라는 경우에 처했을 적에 생각보다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말 못할 國家機密이 있을 적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國會議員 모두가 公開하라고 그래도 非公開로 하자는 데에 거의 同意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의미에선 우리 國會議員의 常識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 法條項을 따질 것이 아니라 公開의 監査를 한다 하는데 우리 委員會가 뜻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따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長時間 서로 曰可曰否 하는 것보다는 잠깐 停會를 해서 各 所屬政黨의 幹事와 協議해서 結論 내리는 것이 會議進行上 오히려 能率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孫柱煥委員 우리가 國會議員으로서 原則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運營의 妙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原則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非公開 監査를 우리가 基本精神으로 하더라도 저는 監査가 非公開다 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國政全般은 公開될 수 없다 라는 하나의 原則闡明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監査는 非公開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地方監査의 경우에는 班長이 所屬委員들과 協議해서 公開하는 權限委任을 이 委員會에서 決議하는 것이 法을 지키는 우리 委員들의 基本姿勢가 아니냐 하는 原則的인 얘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16時13分 會議中止)

(16時2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續開하겠습니다. 방금 前에 論議가 됐던 監査를 公開로 할

것이냐 非公開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他委員會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또 各 幹事님들이 黨과 協議해야 될 시간도 가져야 될 必要性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문제를 結論짓지 말고 다음 會議에서 結論을 내리자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留保를 하겠습니다.

2. 國政監査結果報告書作成小委員會構成의件

(16時24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 한 가지 처리할 件이 또 있습니다. 專門委員이 방금 前에 說明한 바와같이 이번 實施하는 20日間の 國政監査期間中에는 監査結果報告書 作成期間이 이틀間 들어 있습니다. 監査結果報告書 作成은 委員長과 4黨間的 幹事會議의 協議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서 國政監査結果報告書作成小委員會에서 하고 小委員으로는 民主正義黨 李康熙委員 平和民主黨의 李海瓚委員 統一民主黨의 盧武鉉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炳龍委員을 選定하고 同 小委員會 委員長에는 盧武鉉委員을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散會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 委員님들에게 想起하고자 하는 것은 國政監査計劃案에서도 說明하여 아시겠지만 要求資料目錄을 9月20日안으로 行政室에 提出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公知事項으로 오늘 總務會談에서 合意된 事項으로 여러 委員님들과 直結되는 問題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國會議員 補佐官을 監査時에 事務補助者로 하지 아니하고 隨行員으로 參與시켜 旅費 등을 支給한다는데 合意하였다 이런 內容입니다. 그러니까 監査하는데 事務補助員으로는 쓸 수가 없고 議員補佐하는데 隨行함으로 해서 그 費用을 國會에서 補助해 주겠다 이런 內容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會議을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27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係 柱 煥
梁 慶 子	李 康 熙	李 潤 子
李 台 燮	張 永 喆	李 相 洙
李 海 瓊	韓 光 玉	金 在 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出席專門委員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鎮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報告事項】

○常任委員變更

委員名	舊委員會	新委員會	交涉團體
劉基洙	行 政	勞 動	新民主共和黨
金炳龍	勞 動	行 政	"

(8月30日字)

委員名	舊委員會	新委員會	交涉團體
劉基洙	勞 動	行 政	新民主共和黨
金炳龍	行 政	勞 動	"

(9月6日日字)

委員名	舊委員會	新委員會	交涉團體
林仁圭	文教公報	勞 動	民主正義黨
孫柱煥	勞 動	文教公報	"

(9月7日字)

委員名	舊委員會	新委員會	交涉團體
孫柱煥	文教公報	勞 動	民主正義黨
林仁圭	勞 動	文教公報	"

(9月10日字)

委員名	舊委員會	新委員會	交涉團體
金在光	保健社會	勞 動	統一民主黨
石準規	勞 動	保健社會	"

(9月12日字)

○請願提出

男女雇傭平等法改正에 관한請願

(7月29日 서울特別市中區貞洞1-23 한국여성단체연합會長 이우정으로부터 朴英淑議員 李相洙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現行 男女雇傭平等法에는 實質的인 男女平等條件인 「同日勞動 同日賃金」등 기타 規定이 누락되었으므로, 法の 實效性을 擔保할 規制條項 등이 未備되어 있으므로 女性들이 平等的 待遇를 받을 수 있도록 男女雇傭平等法의 改正을 願함
2. 經濟成長의 一翼을 擔當해 왔으면서도

그동안 正當한 待遇를 받지 못한 女性 勤勞者들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1987年 男女同一賃金規定 등이 누락되는 등 未備點이 많아 女性勤勞者들이 平等的 待遇를 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

3. 「同一勞動 同一賃金」등 기타條項을 插入하여 實質的으로 平等的 待遇를 받을 수 있도록 男女雇傭平等法의 改正을 바라는 請願임.

8月8日字 回附됨

○通報

1988年度國政監査計劃協議의件

(9月14日 國會運營委員長으로부터 原案대로 議決하였다는 通報가 있음)